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2059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3. 18. 선고 2021가단9310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20. 11. 3. 접수 제11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1행 ‘계사한’을 ‘계산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13, 14행 ‘E’을 ‘C’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7행 ‘망인의 배우자인 G의’를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G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21행 ‘을 제2 내지 15호증의’를 ‘을 제2 내지 15, 18, 20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7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망인의 2019년부터 사망시까지의 요양병원비, G의 2019년부터의 요양병원비와 의료비를 각 지출하였는바, C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망인 및 G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및 의료비 부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1). 위와 같은 피고의 망인 및 G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된 상속재산 가액, 사적 자치의 원칙상 상속인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의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6쪽 12행 ‘불과하여’를 ‘불과하고, 그 지상에는 공동상속인인 J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있어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16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994년경 발생하였고, 원고가 2009. 12. 24. C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발생 시점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피고가 C의 재정 상태를 모두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이민영, 판사 옥제영

1)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을 들고 있으나, 해당 판례는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바, 결국 ‘기여분 관련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